제11차 일・한 학술토론회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

일 시: 2015/ 10/ 13 (화)
장 소: 긴끼세리사회관

긴끼세리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목 차

Ⅰ 회장인사
(1)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 1
(2) 긴끼세리사회 회장 / 3

Ⅱ일본의 세무조사 현황
(1) 세무조사의 의의 / 5
(2) 세무조사의 종류 / 5
(3) 서면첨부제도 / 7
(4) 장부조사 (법인세신고서 등으로부터 조사의 진행방향) / 13
(5) 수정사항의 지적과 해명 (반론) / 25
(6) 조사결과의 통지 / 25
(7) 수정신고서의 제출 (경정, 부과결정) / 29
(8) 가산세、연체세의 부과결정 / 33
(9) 무예고조사 / 37

Ⅲ한국의 세무조사 현황
(1) 납세자 권리 / 41
(2)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 / 49
(3) 세무조사 / 69
(4)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 93
(5) 비밀유지 / 93
(6)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95
(7)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95
(8) 과세 전 적부심사 / 97
(9) 납세자의 협력의무 / 101
(10) 납세자보호위원회 / 101

Ⅳ 질의 응답
(1) 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 / 103
(2) 일본측에서 한국측에 질문 / 113

Ⅴ 참고 자료
(1) (일본) 조사수속 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에 관하여 (사무운용지침) (국세청) / 127
(2) (일본) 조사상황표 (국세청 리포트2015) / 145
(3) (한국)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 149

인 사 말 씀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가을,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 좋을 때 학술토론회를 위해 귀 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아다사 츠네히로 회장을 비롯한 긴끼세리사회 임원 여러분과 회원님, 저는 지난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귀 회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AOTCA총회가 귀 회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학술토론회가 더욱 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10차례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등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충실히 친선우호관계를 돈독히 구축해 왔습니다.

금번 주제는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이나 제도의 특징 등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세무사가 조세행정 역할 등에 대한 적절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유익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양국은 유사한 세무사제도와 법률 등을 갖고 있어 상호 같은 방향을 향해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술토론회는 장족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긴끼세리사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3

부산지방세무사회
회 장 최 상 곤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입니다.

우선 지난해 10 월 2 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창립 50 주년 기념식 및 기념축하연에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곳 오사카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귀 회와 우리 회는 1991 년 우호친선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 2005 년 11 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매번 중요한 테마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평가는 긴끼세리사회 내외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제목은 한국・일본 양국의 세무조사 현상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세무조사현상이나 제도의 특징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시고, 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カムサハムニダ)

２０１５년１０월１３일

긴 끼 세 리 사 회
회 장 아사다 츠네히로

Ⅱ 일본의 세무조사 현황

1. 세무조사의 의의

「국민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30 조) 라고 되어있다. 일본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비롯한 국세의 대부분은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소득계산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자진 신고가 기본이다.

그러나, 스스로 신고하는 이상 그 내용에 세법의 잘못된 해석, 계산실수에 의한 세액의 잘못 또는 악의의 납세자에 의한 자의적 탈루, 무신고나 탈세도 있어 부당히 납세를 면할 우려가 있다.

세무조사란 이러한 잘못된 신고가 만연하여 납세자간에 과세의 불공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 또는 그 관할조직(세무서)에 의해 납세의무를 적정히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절차를 실시할 때의 기본적인 시고방식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 」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국세 (국세통칙법 (이하「통」이라 한다.) 제 74 조의 2 부터 법제 74 조의 6 까지 게재된 세목에 한한다)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특정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을 인정하는 목적 그밖에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하는 당해 직원이 행하는 일련의 행위(증거자료의 수집, 요건사실의 인정, 법령의 해석적용 등)로 되어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행하는 행위에 있어 특정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을 인정할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통달１－２)

２. 세무조사의 종류

강제조사 (사찰) 가 아닌 일반적인 임의조사의 양태는 아래와 같다。

(1) 준비조사

조사대상이 되는 회사의 문제점이나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을 판단할 지, 처음부터 실지조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책상위에서 조사하여 필요하면 입지조건이나 영업개요를 파악하는 외관조사를 한다.

구체적인 체크항목

① 빈번하게 경정・결정을 받고 있다.

② 대규모의 매출누락이나 가공계상이 있다.

③ 세법을 소외하고, 친족끼리의 경영

④ 경비를 불리거나, 개인경비를 회사부담으로 한 적이 있다.

⑤ 연도에 따라 소득에 변동이 있다。
⑥ 과거의 동향 (상속, 증여 신고도 없는데 고가의 물건을 취득하고 있다・신고소득의 폭이 현저・경리부문이 약하다고 과거조사때 판명되었다) 등.

(2) 실지조사
조사관이 실제로 조사대상법인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거나, 서류를 살펴본다。
① 일반조사
제출된 신고서가 세법규정대로 처리되었는가의 검토를 행한다
장부조사가 중심이지만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점, 공장, 창고 등의 현장확인도 한다 。
② 현황조사
강제는 아니지만,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락커, 사무실책상, 금고에서 쓰레기통까지 조사한다。
③ 반면조사
조사대상법인의 매출처, 매입처, 그밖의 거래처에 대해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
신고서의 무심사,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밝히고 상대거래처로부터 증거를 잡기 위함
④ 은행조사
조사대상법인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주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는 조사
⑤ 특별조사
일반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조사반이라 불리는 프로급 조사팀을 만들어 엄밀하고 보다 세밀하게 행하는 조사。
⑥ 종합조사
단독으로 하는 실지조사로는 해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그룹의 계열기업 등을 선정하여 행한다。

3. 서면첨부제도
(1) 취지
서면첨부제도란,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며, 정리하고, 상담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고서의 작성을 정확히하여, 세리사법제 1 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법전문가인 세리사에 부여된 권리의 하나이다。
또한, 세리사가 신고서작성에 관하여 어느정도 관여하였고, 어떻게 작성했는가를 첨부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화・원활화・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된다。

(2) 서면첨부제도의 효과

서면첨부제도란, 세리사의 사회적 신용·지위를 보다 향상시키면서 납세자의 신고서의 적정성 향상이나 납세자와의 신뢰관계의 양성 등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세리사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된다.

또한, 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조사여부의 판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외에,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의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시점에서는 조사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사생략의 통지가 문서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의견청취와 조사는 명확히 구분되어 의견청취시 질문 등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면첨부제도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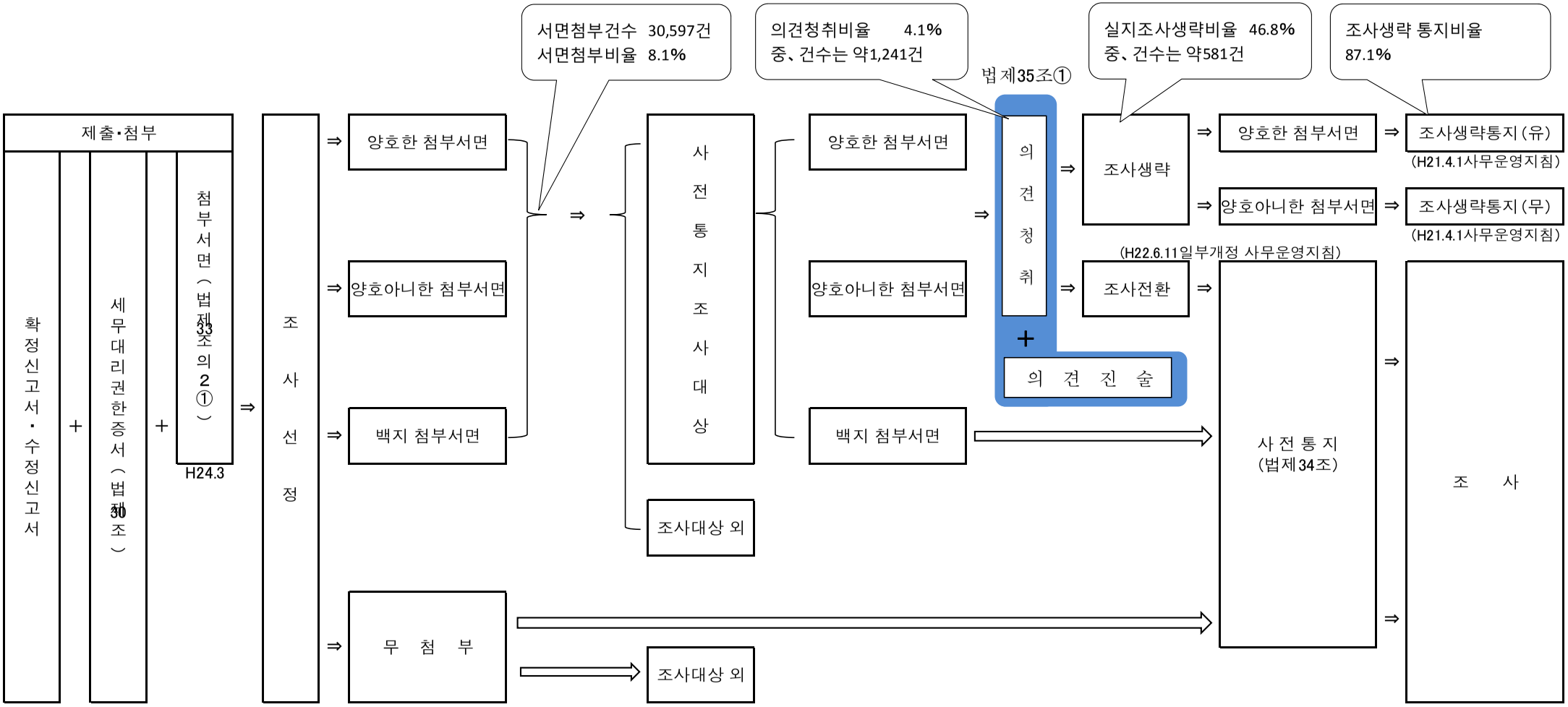

↑(오사카 국세국 관내)
법인세 신고건수(436,987건) 중、세리사 관여건수(379,336건) $\frac{\text{관여수}}{\text{신고수}}$ = 86.8%

4. 장부조사 (법인세신고서 등으로부터 조사의 진행방향)

세무신고시의 주된 제출서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때의 착안점,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 (1) ○년○월○일 사업년도분의_____신고서

별표 1 (1) 은 법인의 개요와 최종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 기재된다。 여기에는 주로 대표자의 주소, 사업종목, 세리사, 대표자, 결산기에 주목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자택을 신축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호황업종이나 문제가 많이 있는 업종은 중대한 부정계산이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고내용을 신중하게 정밀조사한다。

세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경리상 트러블에 의한 경우가 있고, 세리사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세리사자격이 없는 자가 관여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경리방법・경영방법에 변경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전임대표자의 퇴직금처리에 대하여도 확인한다.

결산기가 변경된 경우는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한다

(2) 별표 2 동족회사 등의 판정에 관한 명세서

별표 2 에는 동족회사를 판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증자한 경우에는 증자납입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타당성를 확인한다。 또한, 부정자금이 유입된 경우도 예상되므로 신중히 조사한다

예를들면, 주주가 대표자가족으로 종업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등의 자의적인 경리가 예상된다。

또한, 동족회사가 아닌 경우,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예산제도가 있는 경우 예산을 다쓰기 위해 경비 등을 이연처리하거나 모회사의 접대비를 자회사로 돌려 경비처리하는 것 등이 예상된다。

(3) 별표 4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명세서

별표 4 에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당기순이익, 배당 및 신고조정항목이 기재되며, 예를 들면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한다。

(4) 별표 5 (2) 조세공과의 납부상황 등에 관한 명세서

별표 5 (2) 는 세금의 납부상황과 납세충당금의 상황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 수입인지가 다액인 경우 수입인지를 특정한 금권가게에서 환금하여 부외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그 사용용도를 확인한다。

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소유물건에 관한 것 등 개인이 부담할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별표 15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서

별표 15 는 접대비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 접대비가 많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대표자가족의 개인적인 비용을 기입하거나 다액의 접대비 중에 금권구입이 있는 경우 금권가게에서 환금, 부외자금으로의 변통이 예상되므로 이를 확인한다。

(6) 별표 16 (2) 구 정률법 또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

별표 16 (2) 는 감가상각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기계를 취득한 경우, 부수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생산능력의 증가에 상응한 제품・재공품 등의 증가여부도 확인한다.

대형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시에 리베이트의 수령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7) 특별상각의 부표

특별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중고품인지 확인한다. 또한,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외주처에서 빌린 것인지를 확인한다。

(8) 별표 16(5) 대체법에 의한 대체자산 상각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

별표 16(5)는 이연자산 상각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로, 이연자산에 노하우 사용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건물권리금이 있는 경우, 당해 건물을 임원 개인이 전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9) 예저금 등의 내역서

현금잔고가 다액인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한다. 현금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실제 현금잔고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또한,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한다. 휴면계좌가 있는 경우 매출제외된 관련 어음이나 수표의 추심계좌로 이용되는 것이 예상된다.

신규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개시 이유를 조사한다. 신규거래처로부터의 입금계좌라면 문제가 없지만, 부외예금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다。

원격지에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부근에 있는 은행과의 거래 유무를 조사한다。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의 경우 기중의 움직임을 조사한다. 기중에 변동이 있는경우 입금후 바로출금하여 장부상 입출금도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10) 받을어음 내역서

신규거래처의 유무를 확인한다. 신규거래처가 있는 경우, 개시당시의 매출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개시 시기를 조사한다。

그러나 기말어음금액이 다른 달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이익조절을 위해 매출을 다음기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다.

어음결제 기한이 장기인 경우, 별도로 이자를 받는지 조사한다.

(11) 외상매출금(미수입금) 내역서

대상법인이 동족그룹법인인 경우, 동족그룹법인간에 결산기가 다른점을 이용하는 외에, 단가조정을 하여 이익조절을 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외상매출금의 상대방 소재지를 파악한다。 원거리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반면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매출이 제외되기 쉽다。

신규거래처의 유무를 파악한다. 신규거래처가 있는 경우는 거래개시를 위해 기밀비(공작비)가 필요하므로 자금의 유출을 조사한다。

외상매출금의 상대방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매출거래처인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 가지급금(전도금) 내역서

외주처나 매입처에의 전도금이 있는 경우, 원조자금을 다음기 이후의 외주비나 매입으로 계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도금의 이유를 확인한다. 반대로 전도금이 외주비나 매입으로 가장될 수도 있다.

또한,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한다。잉여자금의 운용목적 등, 대부금이라면 이자를 수령할 필요가 있다。

(13) 대여금 및 수입이자 내역서

수입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외로 수령하고 있는지가 예상 된다。

(14) 재고자산 (상품 또는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내역서

단수없는 금액으로 재고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실지재고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단가가 낮은 경우는 그 이유를 조사한다.

그리고,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위탁재고는 없는가, 부산물은 계상되어 있는지, 지점이나 영업소의 재고도 누락되지 않고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15) 유가증권 내역서

주식매매가 개인거래는 아닌가를 확인한다. 또한 기재되어 있는 증권사 이외에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는 없는지를 확인한다。

주식의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매매한 거래를 부외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회사四季報 」등에서 무상증자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단주는 부외로 매각하지 않았는지 조사한다.

이외에도, 배당금수입은 없었는지, 개인과 법인 각각의 매매손익의 대체처리는 없었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이나 리조트회원권 등에 대하여는, 개인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한다。

(16) 고정자산 (토지,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 및 건물에 한한다。) 내역서

신규취득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축할 때 축의금은 잡수입에 계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리고 부수하여 대표자 자택의 공사비 등도 비용처리 하였는지 유의한다。

창고가 있는 경우 창고내의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비 수입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목적을 확인한다. 원거리에 임원의 자제가 거주하고 있다든가, 근처임에도 대표자와 특수관계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17) 지급어음 내역서

부정계산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통상의 결제조건과 비교하여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이 이상한 것은 확인한다.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금력이 약하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 지급을 가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음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가공매입이나 외주비의 혼입, 신규나 단발성 지급처는 가공 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남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액의 어음이나 조건이 다른 어음은 융통어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가공원가로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18) 외상매입금(미지급금・미지급비용) 내역서

잔액이 전기에 비해 다액인 경우 다음기의 매입을 당기로 앞당겨 계상하여 이익조절을 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잔액이 전기와 같은 경우는, 전기이전의 가공매입의 미결제분일 가능성에 유의한다. 상대방이 동족관계 법인인 경우, 결산기가 다른점을 이용하거나, 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불완전한 경우, 가공이나 가명매입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장부나 기재에 미비점이 많고, 부정에 가담하기 쉽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명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가공매입을 계상하거나, 원거리의 매입처와 공모하여 가공매입계상 및 신규거래에 있어 소비세 등의 단수가 없는 것은 부자연하다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기계대금 등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는 특별상각을 부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다음기에 취득한 기계를 당기에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한다。

신용카드 미지급금이 있으면, 카드명세서를 확인하여, 개인경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급처에 백화점이 있는 경우 외상상품명을 고쳐 개인경비를 법인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유의한다.

또한, 미지급설계비 등은 원천징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게다가 지급확정후 1 년 경과해도 미지급한 배당금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소득세을 납부한다.

(19) 가수금 (선수금・예수금) 내역서

단골거래처인 경우, 당기 매출대금 입금액을 선수금으로 가장하여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의 이연여부를 조사한다. 게다가 단골거래처의 가공매입에 가담하여 선수금 처리, 매출대 입금액을 대표자의 대표자가수금으로 할 수 있다.

(20) 차입금 및 지급이자 내역서

매출대금을 차입금으로 가장, 부외자산을 차입금으로 가장하여 공표하는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자금의 출처가 타당한지 조사한다

그 밖에도,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을 지인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가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기중 지급이자의 합계액이 손익계산서의 지급이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공이자를 계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한다。

(21) 토지매각 등의 내역서

기재된 「소재지 ・ 보유기간」에 의해、당해 토지의 취득이 투기목적인지를 확인한다. 투지목적으로 판단되면, 그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축소하기 때문에 부정계산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관련항목을 정밀조사한다。

또한, 매입처, 매출처가 동족법인인 경우 매매대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22) 매출액 등의 사업소별 내역서

기재된 사업소의 책임자가 동족관계자인 경우, 부정계산을 하기 쉬우므로 유의한다.

엽업효율관계에서는 일인당 매출 및 평당 재고변동이 현저한 경우, 그 이유와 영업실태를 파악한다。

지점에서 원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점독자적으로 가공인건비계상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한다.

지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현장이 아니라고 예측하여, 매출제외나 재고제외 등의 부정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23) 임원보수수당 및 인건비 내역서

가족인 경우, 과대보수가 아닌지 확인한다。

퇴직금이 지급된경우, 과대한 퇴직금이 아닌지 확인한다。

임금 중 파트타임에 관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명의를 분산하여 원천소득세의 과세를 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차명 등에 의한 가공인건비 계상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24) 토지임대료 등의 명세서

대표자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임대차물건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한다。

사택의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임대료수입을 부외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임대료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또한 집세를 받지 않는 경우 현물급여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대표자의 자제 등(또는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지 확인한다.

창고를 임차하는 경우 이용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창고의 경우 실지재고가 허술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25) 공업소유권 등의 사용료 내역서

특허권 사용료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204 조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26) 잡이익, 잡손실 등의 내역서

리베이트가 있는 경우, 현금결제의 경우는 제외되기 쉬우며 상대측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스크럽이 생기는 업종인 경우, 매각수입은 제외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가사관련비를 잡수입으로 정산하고 있는 경우, 특히 가족인 종업원이 경리를 담당 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과 개인의 경비가 혼동되기 쉬우므로 조사한다.

고정자산제각손실이 있는 경우, 가동 중인 자산을 제각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한다。

고정자산매각손실이 계상된 경우, 중고자산매각가액을 압축하고 신차의 할인액을 늘려서 처리하였는지 확인한다.

대손처리한 경우, 그 후 부외로 회수하였는지 조사한다。

유가증권매각손실이 있는 경우, 개인거래에 따른 손실을 법인측에 대체처리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7) 사업개황설명서

사택, 기숙사가 있는 경우 임대료수입의 계상이 적정한가를 조사한다。

매출, 매입의 월별거래액의 대응관점에서 볼때, 매월말 추계재고가 적자인 달이 있는 경우 재고제외, 가공매입 혹은 매출제외가 예상되므로 확인한다。

결산월의 거래액과 결제일 등의 상황으로 볼때 결산서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등의 계상액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매달의 인건비, 종업원수, 원천징수세액에 이상은 없는지 또는 결산월에 결산에 따른 결산상여금 지급은 없었는지, 그 처리는 적정한지 확인한다。

가입조합 등의 관점에서 동업자간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정계산방법을 확인한다。

영업시간, 휴무일에 기재가 있는 경우 현황조사, 무예고조사 실시일을 선정해 보는것도 고려해 본다. 또한 현금수입법인은 영업시간의 연장이나 휴무일에 영업한 매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한다。

5. 수정사항의 지적과 해명 (반론)

일반적으로 조사시 수정사항에 대한 지적과 그 설명 및 해명은 장부의 계정별조사 중에 하도록 고려해 본다.

반면조사나 은행조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날을 정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 설명 또는 그에 대한 해명, 반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 실지조사 수일 후 조사관은 세리사 또는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조사지적내용을 정리한 일람표를 건네어 설명을 한다。

세리사는 그 지적사항일람표 받아 납세의무자와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세무조사의 최종단계에서는 경정처분을 하고자 함이 세무당국의 원칙이다. 다만,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서류작성이 번잡한 점, 경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정에 대신하여 수정신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6. 조사결과의 통지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그 후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경정결정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을 통지 (통７４의１１①)

②경정결정 등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내용설명 등 (통７４의１１②)

③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권장 등 (통７４의１１③)

④조사종료 후 재조사의 절차 (통７４의１１⑥)

(1) 경정결정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을 통지

세무서장 등은, 실지조사를 행한 결과, 경정결정 등을 해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며 세무조사시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었던 자에 대해「그 시점에 있어서 경정결정 등을 해야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다（통７４의１１）。

(2)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내용 설명 등

실지조사를 행한 결과, 경정결정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직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그 조사결과의 내용（경정결정 등을 해야 할 금액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납세의무자에게 설명한다（통７４의의１②）。

또한, 조사결과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 세무직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권장하는 경우에는「조사결과에 관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뜻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뜻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통７４의１１③）。

(3) 조사결과 내용설명 후의 조사재개 및 재차설명

국세에 관한 조사결과, 통제 74 조의 11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을 한 후, 당해 조사에 관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정신고서 혹은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 혹은 원천징수에 관한 소득세의 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 또는 경정결정 등을 하기까지, 당해 설명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당해 설명의 근거가 없어진 경우 등 세무직원이 당해 설명에 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조사를 재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조사절차통칙５－４）.

(4) 납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연결모법인에의 통지 등

전술한「경정결정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뜻의 통지」및 「조사결과 내용의 설명 등」에 대하여는、납세의무자가 연결자법인인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의 통지에 대신하여, 각각 다음자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통７４의１１④⑤）.

①연결자법인인 경우

연결자법인(납세의무자) 및 연결모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연결모법인.

②납세의무자에게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대리인。

(5) 재조사

경정결정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뜻을 통지를 한 후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정신고서 혹은 기한후신고서의 제출 혹은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가 있은 후 혹은 경정결정 등을 한 후에 있어서도, 세무직원은 새로이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 또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문검사권 (재조사) 을 행사할 수 있다(통７４의１１１⑥).

７. 수정신고서의 제출 (경정, 부과결정)

(1) 6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지조사를 한 결과,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직원은 그 조사결과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또한, 조사결과의 내용을 설명하는 때에는 세무직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권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경우 조사결과에 관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불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뜻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 등이 행한 경정이나 결정 등에 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신청은 처분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 월이내에 신청을 하는 「이의신청」과 이의결정서의 송달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 월이내에 신청을 하는「심사청구」가 있다。

그리고, 처분・재결이 있었음을 통지한 날부터 6 월이내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소신고소득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납세신고서를 수정신고서라고 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경정 또는 결정한 세액에 과소인 경우 순손실금액 또는 환급금에 상당하는 세액이 과대한 경우 등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경정 및 결정

①경정

세무서장은, 납세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이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지 않은 때, 그 밖에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이 조사한 것과 상이한 때에, 그 조사에 따른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을 확정하는 처분을 한다.

이 처분을 경정이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정을 증액경정이라 하고, 감소하는 경정을 감액경정이라 한다。
②결정
세무서장은 납세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로써 과세표준 등 및 세액 등을 확정하는 처분을 한다. 이 처분을 결정이라고 한다.
또한, 결정하여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생기지 않는 때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경정 또는 결정 절차
경정은 경정전과 경정후의 과세표준 등 및 세액 등과 비교하여 증감한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또는 결정은 과세표준 등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결정통지서를 각각 송달한다。

(4) 부과결정
①부과결정하는 사항
부과결정방식에 의한 국세의 확정절차를 부과결정이라 한다。 부과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해 이루어 진다.
a.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것과 같은 때 ⇒ 납부할 세액
b.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국세에 대해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것과 상이한 때
⇒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
c.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때 ⇒ 과세표준 (가산세 및 과태료에 관해서는 그 계산의 근거가 된 세액) 및 납부할 세액
또한, 세무서장은 부과결정을 한 후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는 조사함으로써 이를 변경하는 부과결정을 한다。
②부과결정 절차
부과결정은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부과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이 통지서의 부기사항은 경정통지서 등과 같다

(5) 이의신청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해 세무서장이나 국세국장이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그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의 다음날부터 2 월이내에, 각 처분을 한 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은 대부분의 경우 세무서장이 하므로,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앞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국세국이나 국세청직원이 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국장 또는 국세청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

(6)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세불복심판소장에 대하여 청구하는 불복신청으로, 세무서장이나 국세국장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이 있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경유한 뒤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이의결정서 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 월이내, 이의신청을 경유 않은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2 월 이내이다.

(7) 소송

① 소송 종류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중 기본적형태인 항고소송을 다시 a. 처분취소의 소、b. 재결취소의 소、c. 무효 등 확인의 소、d.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e 의무이행의 소、f. 금지의 소로 구분된다。

세무소송의 대부분은, 이 중에서 항고소송 즉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이다。

② 불복신청의 전치

국세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의 결정 또는 재결을 받은 후 6 월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불복신청전치주의) 。

８. 가산세, 연체세의 부과결정

(1) 가산세

가산세란,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에 대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적정한 신고가 없는 경우 및 원천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 법정납부기한까지 적정한 납부가 없는 경우, 그 신고 또는 납부를 태만하게 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 또는 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한 일종의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적정한 신고가 아니고 납부나, 탈세범, 무신고범 또는 미납부범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로 형사벌이 부과된다. 가산세제도는 각 세에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통칙법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신고납세방식의 국세…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중가산세

다만,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석유가스세 및 석유석탄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중가산세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원천징수하는 국세…미납부가산세 및 중가산세

각종 가산세의 과세요건, 과세비율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종 류	과 세 요 건	과 세 비 율 (증감 본세에 대해)	미적용 또는 과세비율의 감면	
			요 건	미적용, 또는 경감비율
과소신고 가산세 (통 65)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통 66 조 1 항단서 또는 동조 6 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에 기재된 금액이 과소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1 0 % 다만, 기한내 신고 세액상당액 또는 50 만엔 중 많은 금액을초과하는부분의세액(가중대상세액)은、상기 1 0 %외에、다시 5 %를 가산	수정신고또는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의 계산기초가 된 사실이 수정신고또는 경정전세액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적용
			조사함으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않고 수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통 66)	신고기한까지 납세 신고서를 제출 않고, 기한후신고 또는 결정 하는경우 ② 기한후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수정 신고또는경정하는경우	1 5 % 다만,납부세액이 50 만엔을초과하는때에, 그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상기 1 5 %외에 5 %를추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미적용
			조사함으로서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5 %
중가산세 (통 68)	과소신고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국세의과세표준 등또는세액등의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을은폐가장하여 납세신고서를 제출한경우(동 1 항)	3 5 %	(주) 1. 가산세의 세목은 계산의 기초가 된 국세와 같다(통 69)。 2. 중가산세는 그외 가산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므로 병과되지 않는다(통 68①~③)。 3. 가산세 100 엔 미만의 단수는 계산기초가 되는 세액이 단수처리되어 1 만엔 단위로 되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무신고가산세가부과되는 경우, 위의 부정행위가 있는경우(동 2 항)	4 0 %		

(2) 연체세

세금이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연체세가 자동 부과된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미납세액에 대해 다음 비율로 연체세가 과세된다。

①납부기한 (注) 의 다음날부터 2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연 7.3%의 연체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0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전년 11 월 30 일자 일본은행이 정한 기준할인율＋4 %」의 비율로 한다。

또한, 2014 년 1 월 1 일 이후의 기간은、연「7.3%」와「특례기준비율＋1 %」의 비율 중 낮은 비율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2.8%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2.9%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4.3%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4.5%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8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4.7%
2007 년 1 월 1 일부터 2007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4.4%
2002 년 1 월 1 일부터 2006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연 4.1%

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 월을 경과한 날 이후는、 원칙적으로 연 14.6%의 비율로 연체세가 과세된다。

다만, 2014 년 1 월 1 일 이후의 기간은、 연「14.6%」와「특례기준비율＋7.3%」의 비율 중 낮은 비율로 한다。 즉,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 연 9.1%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은、 연 9.2%

(注)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
납부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 월 후의 날

③ 신고기한내 신고서 제출 후 1 년이상 경과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중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법정납부기한부터 1 년을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경정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는 연체세의 계산기간에서 공제된다。

9. 무예고조사

(1) 의의

세무서가 세무조사 (실지조사) 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한다. 그렇지만, 사전통지는 어디까지나 원칙인 것이며, 예외도 있다。

조사대상자인 납세자의 신고상황, 과거 세무조사의 내용, 당해 납세자의 거래 자료전의 내용 등에 비추어、

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용이하고 정확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파악을 곤란하게 할「우려」

② 그밖에 국세에 관한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사전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통 74①).
소위「무예고조사」라고 불리워지는 조사수법이다。

(2) 국세통칙법개정 이전의 취급
종전에는、
①업종, 업태, 자료정보 및 과거의 조사상황 등으로 볼 때, 장부서류 등에 의한 신고내용 등의 적부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조사 (무예고조사) 에 의해 있는그대로의 사업실태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내용 등에 관한 사실파악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②사전통지를 함으로 인해 조사에 대한 기피・방해 혹은 장부서류 등의 파기・은폐등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내부규정 (사무운용지침 등) 에 의거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하여 왔다。
국세통칙법의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새로이 제시되어, 무예고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진행의 적정・원활화가 기대된다。

(3) 무예고조사 개시후의 진행
사전통지를 하지않고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히、
① 조사의 목적
②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
③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④ 조사대상이 되는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
⑤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
⑥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관서
를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 (조사목적,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의 도중에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문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뜻을 설명하고,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후 신속히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index.htm＞
・ 세무대학교 세무대강의본 「국세통칙법 (2015 년도판) 」
・ 세무대학교 세무대강의본 「법인세법 (2015 년도판) 」

Ⅲ한국의 세무조사 현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시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함은 당연하며, 국세청에서는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1989 년 1 월 25 일 제정(국세청훈령 제 1032 호)하여 세무조사 시 반드시 이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15 차례 훈령을 개정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시작 된다. 작성순서는 (1)납세자 권리 (2)세무조사관할 및 대상 (3)세무조사 (4)세무조사결과 통지 (5)비밀유지 (6)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7)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8)과세전 적부심사 (9)납세자의 협력의무 (10)납세자 보호위원회 (11)조사사무처리규정 순으로 한국의 세무조사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납세자 권리

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2)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 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수령증을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장부 서류 보관 금지,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비밀유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사항과 그밖에 납세자의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a.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

b.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c.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 · 신고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히 성실성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②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국기법 제 81 조의 4)

①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의의
조사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a.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b.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c. 2 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d.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원 입장에서는 기각을 하기엔 논리가 부족하고, 인용을 하자니 기존의 사례를 뒤집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국세청과 대기업 사이에 새롭게 엇갈리는 쟁점이 있으면 재조사 결정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는 재조사 결정은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적다는 사유로 재조사 결정을 받은 국내 대기업이 상당수 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법인세 심판청구 재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5/06/22현재)

연 도 별	심판청구 건수	재조사 건수	비율(%)
2013년도 상반기	207	0	0
2013년도 하반기	356	0	0
2014년도 상반기	482	44	9.1
2014년도 하반기	408	36	8.8
2015년도 상반기	321	28	8.7

e. 그밖에 제 1 호부터 4 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과세관청의 조사 중 금지 행위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 기간 중 금지행위】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2)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 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
(3)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4)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③조사권남용에 대한 조사관리자의 관리 및 감독의무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조사권남용 위반자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
조사관서장은 조사권 남용금지 또는 조사 중 금지행위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세무대리인의 선임(국기법 제 81 조의 5)
①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기간 / 조문	2011.1.1~2011.12.31 까지	2012.1.1~현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의미
국세기본법 제 81 의 5 조(법률 11124 호,2012.1.1. 시행) 개정으로 세무조력자의 범위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세무대리인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다.

②세무대리 위임장의 제출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위임장」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과정에의 입회 및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④선임된 세무대리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세무대리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1)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3)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4)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사항

(2)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국기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사대상자선정 → 조사계획 수립 → 세무조사의 시작 → 세무조사 진행 → 세무조사의 종결로서 5단계로 구분된다.

1)세무조사관할

세무조사관할은 납세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행한다. 통상 대형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기법81조의 6 ①)<신설 2014.1.1>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조세포탈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병과벌주의/가중처벌)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조사관할에 대해서는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의 조사사무의 관할과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세무조사 관할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령 63조의 3)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1) 국세청 조직

청 장
대변인
차 장
감사관
감사담당관
청렴세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창조정책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국세통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전산정보관리관
전산기획담당관
전산운영담당관
정보개발담당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사1담당관
심사2담당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징세법무국
징세과
법무과
법령해석과
세정홍보과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전자세원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소득관리과
학자금상환과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차세대기획과
시스템개발과
업무개발팀
지방국세청 (6)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
세 무 서 (117)

표 2) 국세청 조사국 조직과 기능

구분	담당사무
조사기획과	•내국세세무조사 총괄 기획·관리 • 내국세세무조사 관련 법규·제도의 운영 총괄 • 조세범칙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 조사인력 개발·양성관련 업무
조사1과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분석·관리 • 주식·출자지분 변동상황 분석·관리
조사2과	•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관리 •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분석·관리 •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등
국제조사과	• 국제거래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분석·관리 • 외환전산자료 수집 및 처리 • 국제거래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
세원정보과	•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 탈세제보자료 및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처리 업무 • 국민탈세감시단 바른 세금 지킴이 관리업무 운영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 조사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사4국은 특수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영권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의례적으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1국 및 조사2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1국에서는 주로 법인기업을, 기타업무는 조사2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 시 납세자는 성실하고 진실할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신고성실도 평가, 선정절차,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에 대하여 조사사무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범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에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며, 납세협력의무불이행, 무자료거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조사사무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이때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기법 81조의 6 ②) <개정 2013.1.1, 2014.1.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 미 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국기령 63조의 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 제5항 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자

② 법 제81조의6 제5항 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최근 9년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천명)	개인	2,236	2,279	2,736	3,074	3,584	3,570	3,785	3,956	4,353
	법인사업	342	361	372	394	416	440	467	500	538
조사인원 (명)	개인사업	3,989	4,049	4,090	3,335	3,068	3,624	3,669	4,563	4,392
	법인사업	6,343	5,545	4,174	2,974	3,867	4,430	4,689	4,549	5,128
부과세액 (억원)	개인사업	2,298	4,563	5,775	4,245	4,771	5,175	7,175	8,571	10,068
	법인사업	30158	27993	39363	26590	20735	35501	44438	49377	66128
조사비율 (%)	개인사업	0.18	0.18	0.15	0.11	0.09	0.10	0.10	0.12	0.10
	법인사업	1.86	1.54	1.12	0.76	0.93	1.00	1.00	0.91	0.96

최근 9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과세액(억원)		9,045	5,299	8,327	8,002	7,008	10800	16569	13824	22753
조사(명)	조사건수	327	399	554	565	383	443	527	641	583
	범칙처분	316	369	530	536	347	421	504	614	523
	고발	277	328	434	468	301	369	449	570	454
	통고처분	39	41	96	68	46	52	55	44	69
	무혐의	11	30	24	29	36	22	23	27	60

세무조사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①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사건에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단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사무 처리규정 -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 7 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 81 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81 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 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③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신고성실도의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①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과장・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3)사전 성실 신고유도

국세청은 기존 사후검증에서 2014년부터 사전안내 강화로 국세행정운영방향을 전환하였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업체별로 전년도 신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각 세무서별 협의회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사전안내 강화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고의적·기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을, 중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로 세수실적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새롭게 구축된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5년 7월 6일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세입예산 확보 방안 등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소관 세입예산 확보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처 ▲조직역량 향상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한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수가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 4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세자 일부를 선정해 탈세유형 등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부가세의 경우 5000명의 납세자에게 2종만 제공하던 자료를 40종으로 늘려 5만5000명에게 제공함으로써 부가세수는 지난해 4월 11조7000억원에서 올해 4월 12조7000억원으로 8.5%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전안내 강화이지만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선정해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는 6만명에게 15종의 자료를 제공해 지난해 4월 기준 15조7000억원이던 세수가 올해 4월에는 17조8000억원으로 13.4% 증가했다.

소득세수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만5000명에게 보냈던 안내문을 53만명에게 보냄으로써 세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신고에서도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제공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해 성실신고 효과를 높이는 한편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불성실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선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거짓진술과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T/F를 운영해 소송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사분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에 구축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생활실태 확인과 현장추정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국세청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4만6600건에서 올해 1만3400건으로 70% 줄었으며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만9000건에서 올해 1만3500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무 차명재산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해 추진,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지방청 18개팀, 121명 배치)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조사와 사후검증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세무조사

1)세무조사기간

가.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조사관서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간 연장사유 -「국세기본법」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1항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6.12.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010.01.01 개정)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2011.12.31 개정)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2010.01.01 개정)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01.01 개정)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2014.01.01 신설)

다.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세무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4.01.01 신설)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4.12.23 개정)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개정) [부칙]

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0.02.18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6.12.31 개정)

2. 조사기간(1996.12.31 개정)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1996.12.31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또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동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 공동사업자”라 한다)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 공동사업자에게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세무조사의 연기 사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2.「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사의 시작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

②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아.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7

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2010.02.18 개정)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1996.12.31 개정)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2010.02.18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2010.02.18 개정)

②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개정)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2010.02.18 개정)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2010.02.1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자.「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4항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의하여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차.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가능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또한 조사관서장이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카.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결과 통지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타. 세무조사의 연기 후 조사개시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로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3) 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부조사, 부분조사 및 단기성실성 검증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전부조사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부분조사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전가격조사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한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부분조사의 전산입력 및 관리

조사관서장은 부분조사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조사

“사무실조사”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마. 단기성 검증조사(간편조사)

“간편조사”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바.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기타의 세무조사

1.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2.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3. “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세목별조사”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세무조사 중지

가. 세무조사 중지의 의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나. 세무조사 중지의 사유

조사관서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 세무조사의 중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0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010.02.18 신설)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3.02.15 개정)

①.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013.02.15 개정)

②.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3.02.15 개정)

③.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3.02.15 개정)

④.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3.02.15 개정)

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3.02.15 개정)

4. 삭제(2013.02.15)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2014.02.21 개정)

라. 세무조사 중지를 할 수 있는 자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 결과 통지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세무조사 중지 후 조사의 재개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의의

조사공무원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나. 조사범위 확대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2012.02.02 개정)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다.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신청

주무국(과)장이「조사사무처리규정」제39조 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한다.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려면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확대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포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않는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주무국(과)를 경유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라. 조사팀의 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조사범위 확대유형에 따른 승인절차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범위 확대 승인절차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부 서류 보관 금지

가. 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장부・서류 보관 금지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다.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목록 교부

납세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서류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마. 일시보관 서류 등의 반환 요청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장부 서류 등의 반환

조사공무원은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7) 통합조사의 원칙

가. 통합조사의 의의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0.01.01 신설)

통합조사에는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가 있으며,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을,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을 통합조사 한다는 의미이며,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세목에 재산제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통합조사의 전산입력 및 관리

조사관서장은 통합조사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통합조사의 예외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①.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③.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4)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범칙사건의 조사
②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①폐업
②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조세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도록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5) 비밀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세무공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⑥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⑦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6)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①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④세무공무원은 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1.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납세자 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8) 과세 전 적부심사

(1)개념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과세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조세불복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2)청구절차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명통지 및 일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②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④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3)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없다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 한 경우

(4)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①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②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③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통지가 지연 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9) 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10) 납세자보호위원회

(1)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안건
다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① 세무조사 대산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사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주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조사대상자가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안내
③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④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⑤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⑥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비밀보호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무 등을 감독한다.

Ⅳ 질의 응답

（1）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

【질문1】

디지털 조사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 국세청에 도입되기 전 세무조사는 조사반장의 감(感)이 세무조사의 성패를 결정지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탈세혐의를 밝혀 내기가 쉽지 않아, 결국 세무조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1년도에 별도부서(첨단탈세방지 담당관)를 신설하여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가공자산을 찾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종류 등의 특수한 조사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이란

PC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입니다. 주로 검찰에서 사용하나 국세청에서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국내 대기업 H사의 탈세첩보를 입수 후 이 기법을 활용해 가공자산 6,400억원을 찾아내 추징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１】

일본에도 정보기술전문관 이라는 디지털분야 전문조사관이 있으며, PC 등의 전자정보를 해석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세무조사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회계장부, 원시기록장표 이외 PC내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인 장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사담당관이 PC내부의 파일을 보고 싶다고 해도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PC내의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으나 소득과소신고 등의 증거가 발견되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2】

한국에서는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에 대응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신설하여, 소득세법 제70조2에 해당(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20억원, 제조업 등 10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에게 허위확인금액에 따라 견책 또는 2년 이내의 직무정지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면첨부제도는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하여 진 것은 아니며, 세리사의 판단 하에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게 한국과의 차이점입니다. 첨부서면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세무조사 때 세리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세리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답변２】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서면첨부와 제 35 조에 규정한 의견청취를 총칭하는 것이며, 2001 년도에 세리사법을 개정할 때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되어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실시되었다.

서면첨부제도의 취지는, 세무전문가인 세리사의 권리로써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세리사법 제 1 조(세리사의 사명)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당국도 세리사가 작성한 첨부서면과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존중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화・원활화・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의 권리이며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의 위촉계약에 의하여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다만, 서면첨부는 세리사가 관여한 정도와 확인사항을 분명히 표시하여 신고서의 적정성을 표명하는 것이며,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하신 첨부서면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세리사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 허위기재란 사실과 다른 기재로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는 상담한 사항」이나 심사의뢰를 받은 신고서에 관하여 「심사한 사항과 결과」를 실제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기재는 아니다. 이 징계관련 규정은 법적으로 첨부서면의 신빙성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며, 「책임과 징계처분」에 있어 허위기재의 해당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세리사·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고방식 (2015 년 4 월 1 일 이후에 행한 부정행위 관련 징계처분 등의 적용)

재무장관 고시 제 104 호(발췌)

Ⅰ 총칙

세리사법(1951 년 법률 제 237 호. 이하「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세리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세리사법인에 대한 처분(이하「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시의 양정 판단은 Ⅱ에 정해진 부정행위 유형마다 양정판단하며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 1 양정판단요소 및 범위

1 부정행위의 성질, 양상, 효과 등

2 세리사의 부정행위 전후의 태도

3 징계처분 등의 전력

4 선택한 징계처분 등이 다른 세리사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

5 그 밖의 개별사정

Ⅱ 양정 사고방식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재무장관)처분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재무장관)처분

세리사

대상행위			판단요소	계고	업무정지			업무금지
					~6월	~1년	~2년	
법45조		제1항(고의)	부정소득금액 등			←	→	
법45조		제2항(과실)	신고누락 소득금액 등	←	→			
법46조		법33조의2의 허위기재	허위기재 건수、정도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자기 탈세(중가)	부정소득금액 등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고액이면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자기신고누락(과소)	신고누락 소득금액 등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조사방해	방해행위의 횟수、정도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명의대여(법37조의2 제외)※	대여인 수、작성건수、기간、대가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업무태만(수임업무)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회비체납		←	→			
법46조	법37조(신용실추행위)	그 밖에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		←	→			
법46조	제37조의2(명의대여)		대여인 수、작성건수、기간、대가		←	→		
법46조	법38조(비밀엄수의무)				←	→		
법46조	법41조(장부작성의무)			←	→			
법46조	법41조의2(사용인 등 감독의무)			←	→			
법46조	법42조(업무제한)		세무대리건수、작성건수、상담건수		←	→		
법46조	업무정지처분 위반						←	→
법46조	그 밖의 경우			←	→			

※세리사업무가 정지된 세리사에의 명의대여

세리사법인

대상행위(법48조의20)			판단요소	계고	업무정지			해산
					~6월	~1년	~2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위반	법인고유의 절차규정(성립신고 등、정관변경、합병 등)			↔				
	법37조	자기탈세(중가)	부정소득금액		↔	↔	↔	→
		고액이면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자기신고 누락(과소)	신고누락 소득금액 등	↔	↔	↔	→	
		회비체납		↔				
	법41조(장부작성의무)			↔				
	법41조의2(사용인 감독의무)			↔	↔	→		
	업무정지처분 위반							↔
	그 밖			↔	↔	↔	↔	→
현저하게 부당한 운영	법45조、법46조에 규정한 행위		사원세리사의 양정(量定)	↔	↔	↔	↔	→
	그 밖위 경우			↔	↔	↔	↔	→

＊화살표표시 ↔는 처분범위를 나타냄

【질문3】

한국에서는 보통 정기조사에서는 1년 또는 2년의 과세기간을 분석하고, 수시조사 때는 3년 정도 분석합니다. 이 경우 당초에 정해진 조사기간에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구체적인 세금탈루의 증거가 없어도 혐의만으로 국세청재량에 의하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는 조항으로 내년부터는「증거」없이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３】

조사연도를 소급하여「세무조사 범위를 확대」연장하는 것은 조사담당관이나 통괄관의 어림계산에 의거 통상 이루어진다. 최근 연도의 수정사항을 발견함으로써 소급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4】

국세청은 세무조사건수는 줄이고 세수는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사후검증에서,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2014년도부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즉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업체별로 전년도 신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내문을 통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각 세무서별 협의회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무조사는 줄이면서 세수는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 등은 있는지요?

【답변４】

일본에서는 국세통칙법의 개정으로 경정기간이 5 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수정신고기간이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된 결과, 조사간격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1 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간격이 3 년에서 5 년으로 벌어졌으나, 종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인도 조사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사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로 인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조치 등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질문5】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조세범칙행위가 발견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탈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수입금액에 연간 조세포탈혐의금액이나 비율이 일정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사 후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대상과 고발 등에 대한 국세범칙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５】

일본에서는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세무서의 일반조사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부정소득이 발견된 경우(경험적으로 3 개 사업연도에서 1 억엔 정도 이상), 국세국 사찰부에 연락한다. 사찰부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수락한 경우 조사는 사찰부에서 강제조사로 바뀌게 된다.

사찰부에서 조사 받게 되는 기준은, 위의 소득기준 외에 유보재산이 있는지가 중요시 된다. 이는 재판에서의 벌금납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면 검찰청이 고발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일본측에서 한국측에 질문

【 질문1 】

중요사건에 대한 전문담당 T/F 란 무엇입니까?

【 답변1 】

국세청이 올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적극적 소송심판대응을 위한 국세청 자체 내의 전담조직(프로젝트팀/Project Team)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심판대응에 나서, 전담 T/F(Task Force)를 운영하는 등, 집중관리로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판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탈세 대응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송무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조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조사과장 면담제를 전면 시행하고 일선 세무서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 관리자 중심의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경력직원으로 세무서 조사과를 보강하고 세무서 국제조사팀・역외탈세 정보팀을 신설・운영한다고 합니다.

2.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청 송무국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하며 팀제를 운영(3 인 1 팀, 세목별 전담팀)하는 한편 소송수행 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 질문2 】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분석 시스템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 답변2 】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이란 체납자의 소득이나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신속히 선정하고,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때에 맞춰 가동할 수 있는 적시성과 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정확도를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은 매년 5 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추어 소득현황을 파악해 분석에 착수하는 등 연 1 회 정도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신규 도입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은 각 관서에서 접수되는 정보를 곧바로 처리가 가능해 월 1 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기 및 가액, 주식보유현황, 소득발생시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경우에 따라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지출 및 재산취득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질문3 】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조세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입법 발의한 상태다」라고 합니다만, 진전은 있는 것입니까?

【 답변3 】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에게 쟁점 사항과 법률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이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불복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2).

(2) 국세기본법 개정 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2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납세자와 최종 협의를 위한 회의(이하 이 조에서 “최종회의”라 한다)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은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최종회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진행상황

본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5년 6월 10일 국회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제안하였고(의안번호 1915529), 기획재정위원회에 2015년 6월 11일자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현재 아직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 질문4 】

신고성실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4 】

Ⅰ. 신고성실도의 평가

①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②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Ⅱ.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의 통보 및 관리

(1)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의 통보

국세청장은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를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2)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의 관리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각종 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이므로 대외보안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Ⅲ.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안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국세청이 아래 9개 유형별로 개별업체마다 분석한자료 중 성실도하위 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성실 신고토록 안내하였습니다.

(1) 적격증빙 과소수취 (2)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
(3)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4)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5) 지급이자 과다계상 (6)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7) 해외 임금 수취 (8) 해외 주식투자 등 회수
(9) 소득률 저조(동종업종 평균소득율 대비 70% 미만)

【 질문5 】
고객만족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란 무엇입니까?

【 답변5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 건의사항 등에 관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소속기관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전화상담-126 번으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세목번호)를 선택하시면 상담관과 연결
②방문상담-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층 상담방문실
③온라인상담-우선적으로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사사례를 검색해보고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

이처럼 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질문을 해도 좋지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 유사사례를 핫이슈 상담사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인터넷 상담사례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 건의, 칭찬 등을 남기면 성실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마련된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준비하는데 세목별로 다양하게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질문6 】

일본에서는 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금상당액 수납관서장이 반드시 동일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 답변6 】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사관할을 달리한 경우 다를 수 있으며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조사범칙사건조사를 마친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범칙 조사에 따라 벌과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 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금상당액 수납 관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고처분 관서장은 통고서 송달과 동시에 통고서 사본을 덧붙여 통고처분 내용을 벌금상당액 수납관서로 지정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課總 5-11
課個 7-4
課資 5-61
課法 4-48
課酒 1-62
課消 4-26
課審 1-43
官總 9-7
官稅 127
査調 2-69
2012 년 9 월 12 일
개정 2014 년 4 월 3 일
개정 2015 년 4 월 15 일

각 국세국장 전
오키나와 국세사무소장 전

국세청장관

조사수속 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에 관하여 (사무운용지침)

위의 건에 대하여 별책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13 년 1 월 1 일 이후는 이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토록 한다.

(취지)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1 년 법률제 114 호) 을 공포 (2011 년 12 월 2 일) 하므로써、국세통칙법 (1962 년 법령제 66 호) 의 일부가 개정되어、국세조사에 관한 규정 (제 7 장의 2) 이 신설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한 조사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수속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별책] 조사수속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에 관하여

제 1 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조사수속에 관해서는, 2011 년 12 월에 국세통칙법 (이하「법」이라 한다。) 의 일부분이 개정되어、절차의 투명성 및 납세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를 할때 납세자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하므로써,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와 신고납세제도를 한층 충실・발전시키는점 및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종래 운용상의 취급이 법령상 명확하게 되었다。

조사실시에 있어서, 이번의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현한다」는 국세청의 사명을 적절히 시행하는 관점에서, 조사가 그 공익적 필요성과 납세자의 사적이익과의 형량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기본적인 사무절차 및 유의사항

1 조사와 행정지도의 구분의 명시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조사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면, 전화, 서면 등의 양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무로써 행하는가를 명시하고, 각각의 행위를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히 행한다。

(주)

1 조사란, 국세 (법제 74 조의 2 에서 법제 74 조의 6 까지에 게기하는 세목에 한한다.)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특정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등을 인정하는 목적 그외에 국세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처분을 할 목적으로 당해 직원이 행하는 일련의 행위 (증거자료의 수집, 요건사실의 인정, 법령의 해석적용 등) 를 의미하는 것임을 유의한다 (「수속통칙」 (2012 년 9 월 12 일부 과총 5-9 외 9 과 공통「국세통칙법 제 7 장의 2 (국세조사) 관계통칙」 (법령해석통칙) 을 말한다。이하 같다.) 1-1) .

2 당해 직원이 하는 행위가, 특정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등을 인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는 것은 조사행위가 아니다. (수속통칙 1-2)

2 사전통지에 관한 절차

(1) 사전통지 실시

납세의무자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쌍방에 대해, 조사개시일 전까지 상당한 여유를 두고,

전화 등으로 법제 74 조의 9 제 1 항에 의거 실지조사시 질문검사 등을 한다는 뜻과 동항 각 호 및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 30 조의 4 에서 규정한 사항을 사전통지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에 앞서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사정을 청취하여 필요시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해야할 조사개시일시를 결정하는 점을 유의 한다.
또한, 사전통지시에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통지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기쉽고 정중한 통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주)
1 납세의무자에게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권한증서에, 당해 납세의무자에의 사전통지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해 행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의 사전통지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2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이들 세무대리인들이 제출한 세무대리권한증서에, 대표하는 세무대리인의 정해져 있는 때에는 이들 세무대리인에의 사전통지는 당해 대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지만, 당해 대표 세무대리인 이외의 이들 세무대리인 (이하「다른 세무대리인」이라 한다。) 에의 사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다른 세무대리인에 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당해 대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유의한다。
3 납세의무자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납세의무자로부터 사전통지할 상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요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를 한다는 것만을 통지하고, 그외 통지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통지하여도 지장이 없음을 유의한다 (수속통칙 7-1) 。

(2) 조사개시일시 등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의 절차
사전통지를 행한 후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사개시일 전에 합리적인 이유로 사전통지한 조사개시일 또는 조사개시장소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개개의 사안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적이익과 실지조사의 적정하면서도 원활한 실시의 필요성이라는 행정목적과의 비교형량 한 후, 변경여부를 적절히 판단 한다. (수속통칙 4-6) 。

(주)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의해, 조사개시일시 또는 조사개시장소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취급하는점을 유의한다 (수속통칙 7-2) 。

(3) 사전통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납세의무자의 신고 혹은 과거의 신고 혹은 과거의 조사결과의 내용 또는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국세청, 국세국 또는 세무서가 그 시점에 보유한 정보에 비추어

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정확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파악을 곤란하게 할 우려
② 그 밖에 국세에 관한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않는 것에 관하여는 법령 및 수소통칙에 의거, 개개 사안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적법성을 적절히 판단한다 (수속통칙 4-7,4-8,4-9,4-10) .

(주)
1 복수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개의 납세의무자마다 판단하는 것에 유의한다。
2 사전통지뿐만 아니라、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현장조사후 신속하게 「조사목적」,「조사대상세목」,「조사대상기간」,「조사대상장부 그밖의 물건」,「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조사담당자의 성명과 소속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조사목적,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도중에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문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납세의무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서 조사를 개시함을 유의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후 신속하게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는 점을 유의한다。

3 조사시의 절차

(1)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 등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분증명서 및 질문검사장을 반드시 휴대하며, 질문검사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제시하여 조사를 위하여 방문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후에 조사에 대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고서 질문검사 등을 한다。

(주)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분증명서를 휴대・제시하고 행정지도로 방문한 뜻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 한다.

(2)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지조사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통지한 사항(위 2(3) 주 2 에 규정한 경우 통지사항을 포함)이외의 사항에 대해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사대상에 추가하는 세목, 기간 등을 설명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어서 조사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검사 등을 한다。

(3) 질문조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대리인 등에의 질문검사 등

조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에 대해 질문검사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당해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

(4)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의 제시・제출요구

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 등이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해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 (사본을 포함한다。) 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 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자의 이해와 협력아래 승락을 얻어서 한다。

(주)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해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 (예:의사 등의 비밀준수의무) 이나 조사 등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관한 규정 (예:종교법인법 제 84 조)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검사 등을 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유의한다。

(5) 제출받은 장부서류 등의 유치

제출받은 장부서류 등의 유치는、

①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조사를 할 공간이 없어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② 장부서류 등의 사본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조사처에 복사기가 없는 경우

③ 상당한 분량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사업소 등에서 당해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설명 등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세무서나 국세국내에서 당해 장부 등에 의거하여 일정한 검사가 가능하여,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부담이나 신속한 조사실시 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쩔수 없이 유치가 필요한 경우나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유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의 이해와 협력하에、승락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장부서류 등을 유치 시 별도로 정한 서면 (이하「보관증」이라 한다) 에 당해 장부서류 등의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에 제출한 자에게 교부한다.

또한, 유치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문서 및 개인정보의 누설 등 방지에도 주의하여 관리한다 。

추후에 유치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한「보관증」과 교환으로 유치한 장부서류 등을 반환한다。

(주)
1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부터 장부서류 등의 반환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속히 반환하는 것에 유의한다。
계속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어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불복신청에 관한 교시를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한다。
2 「보관증」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서면이므로、「보관증」을 교부할 때에는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교부송달의 절차로서 서명・날인을 하는 것에 유의한다。
3 「보관증」과 교환하여 유치된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장부서류 등을 반환한 사실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보관증」에 반환받은 뜻을 기재 및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음을 유의한다。
이 경우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부터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다는 뜻을 기재에 대신하여 반환이 필요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받는 것에 유의한다。

(6) 반면조사의 실시
거래처 등에 대한 반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반면조사처에의 사전연락의 적부를 충분히 검토한다。

(주) 반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면조사인 뜻을 거래처에 명시하고 실시하는 것에 유의한다。

(7) 증거의 수집・보전과 적확한 사실인정
조사과정서 신고내용 등에 관해 비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파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그 사항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 그 의견 또는 주장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설명내용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의 수집・보전을 한 후에 적확한 사실인정을 하고, 법제 74 조의 11 제 2 항에 근거하여 조사결과 내용설명 대상이 되는 경정결정 등을 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인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한다 。

4 조사를 종료할 때의 절차

(1)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통지
실지조사의 결과, 경정결정 등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목,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 74 조의 11 제 1 항에 의거,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세목,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주)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검사 등을 하여, 그 결과 조사대상이 된 전부의 세목, 과세기간에 있어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내용을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뜻을 구두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연락한다.

(2) 조사결과 내용설명 등

조사결과,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고 인정되는 비위가 있는 경우 법 제 74 조의 11 제 2 항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비위의 내용 등 (세목, 과세기간,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금액, 그 이유 등) 에 관해 원칙적으로 구두로 설명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비위의 항목이나 금액을 정리한 자료 등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위해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질문 등이 있는 경우 알기 쉽게 답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아울러 납부할 금액 및 가산세 외에 납부할 세액에 따른 연체세의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당해 조사 결과의 내용의 설명 등 (아래(3)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등의 권장을 하는 경우、수정신고 등의 권장 및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를 포함한다.) 으로 원칙적인 일련의 조사절차가 끝난다는 뜻을 설명한다。

(주)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조사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 를 행한 결과에 관해,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고 인정되는 비위사항이 적고, 비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므로써 그 내용에 관해 납세의무자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것인 경우, 구두에 의한 설명에 대신하여 서면에 의하여 조사결과의 내용을 설명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유의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사결과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알기쉽게 답하는 것에 유의한다。

(3) 수정신고 등의 권장

납세의무자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고 인정되는 비위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이하「수정신고등」이라 한다.) 를 권장한다。

또한, 수정신고 등을 권장하는 경우 당해 조사결과에 관해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 (이하「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 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뜻을 확실히 설명 (이하「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라 한다) 함과 동시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 (이하「교시문」이라 한다.) 을 교부한다。

(주)
1 교시문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교시문을 대면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해 교부송달의 절차로서의 서명・날인을 받는 점을 유의한다。
2 서면을 송부하므로써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권장하는 때에는 교시문을 동봉하는 것에 유의한다。
또한, 이 경우 교부송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시문의 수령에 관해서 납세의무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할 필요는 없음에 유의한다。

(4) 조사결과 내용 설명 후의 조사의 재개 및 재차 설명
상기(2)의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을 한 후、당해 조사에 관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정신고서 등의 제출 혹은 원천징수에 관한 소득세의 납부가 있기까지 또는 경정결정 등을 하기까지는 당해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의 전제가 된 사실이 상이한 것이 명확히 되어 당해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의 근거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에 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재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조사결과의 내용을 설명 한다 (수속통칙 5-4) .
또한,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의 근거가 상실된 경우란, 납세의무자로부터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있어 당해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상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5)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조사결과의 내용설명 등
실지조사에 경정결정 등을 해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뜻의 서면통지, 조사결과의 내용설명, 수정신고 등의 권장,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 및 교시문의 교부 (이하「통지 등」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해 당해 통지 등을 할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동의 유무확인은、
①전화 또는 현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②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뜻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방법

의 어느쪽이던 관계없다.
(주)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에 있어서도, 실지조사의 경우에 준해서,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사결과의 내용설명, 수정신고 등의 권장,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 및 교시문을 교부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다만,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에 있어、상기 ① 또는 ②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을 받는 것에 대해 위임되어 있는 뜻의 신청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사결과의 내용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유의 한다. (수속통칙 7-3)

(6) 재조사의 판정

경정결정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후 또는 조사 (실지조사에 한한다)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정신고서 등의 제출 혹은 원천징수에 관한 소득세의 납부가 있은 후 혹은 경정결정 등을 한 후에,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된 세목, 과세기간에 대해 질문검사 등을 한 후에, 새로이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령 및수속통칙에 근거하여, 개개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적법성을 적절하게 판단한다. (수속통칙 5-7、5-8、5-9)

(7) 그 외

조사 시, 앞으로의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장래에 걸쳐 스스로 적정한 신고, 납세 및 장부서류의 구비 등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5 이유부기 실시

행정절차법 제 2 장에 규정하는 신청에 관하여 거부처분 또는 동법 제 3 장에 규정하는 불이익처분 (동법 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한 사항 제외) 을 행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동법 제 8 조 또는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유의 제시(이유부기) 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처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 불복신청시 도움이 되도록 이유부기 취지가 확보 되도록 적절히 한다.

(주) 소득세법 제 155조 (청색신고서 관한 경정) ,법인세법 제130조 (청색신고서 등에 관한 경정) 등 각 세법에 이유부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관해서는 종전대로 당해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이유부기를 하는 것에 유의한다。

조 사 상 황

【신고소득세 실지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건수	신고누락건수	신고누락 소득금액		추징세액	
			1건당		1건당
천건 62	천건 51	억엔 4,137	만엔 671	억엔 696	만엔 113

【원천소득세 실지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건 수	비위건수	추징세액
천건 117	천건 32	억엔 254

※2013년1월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추징세액에는 부흥특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실지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구분	건수	신고누락건수	신고누락소득금액		추징세액
				1건 당	
	천건	천건	억엔	만엔	
법인전체	91	66	7,515	829	1,591
조사과소 관법인	3	2	3,215	11,845	678

【소비세 실지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구분	건수	신고누락건수	추징세액	
				1건당
	천건	천건	억엔	만엔
개인	32	26	169	53
법인	87	49	378	44

【상속세 실지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건수	신고누락건수	신고누락과세가격		추징세액	
			1건 당		1건 당
천건 12	천건 10	억엔 3,087	만엔 2,592	억엔 539	만엔 452

【법정자료 수집매수】

(2013사업연도)

법정자료	수집매수
	천매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20,101
이자 등의 지급조서	1,089
배당 등의 지급조서	87,952
기타	211,611
합 계	320,753

査 察

【세무사찰 상황】

(2014연도)

착수 건수	처리 건수	고발 건수	탈세액(총액)		탈세액(고발분)	
				1건 당		1건 당
건 194	건 180	건 112	억엔 150	백만엔 83	액엔 123	백만엔 110

【범칙사안 상황】

(2014연도)

고발건수	그 중 탈세액 3억엔 이상	그 중 탈세액 5엑엔 이상
건 112	건 6	건 1

【고발사건의 세목별상황】

(2014연도)

세 목	건 수	탈세액(총액)	
			1건 당
	건	억엔	백만엔
소득세	18	18	102
법인세	69	75	109
상속세	2	5	244
소비세	13	11	87
원천소득세	10	14	137
합계	112	123	110

권 리 구 제

【이의신청 상황】

(2013연도)

구분	이의신청건수	신규신청건수 ①	처리필 건수 ②	청구용인건수			비율③/②
				③	전부	일부	
	건	건	건		건		%
과세관련	2,770	2,002	2,183	252	73	179	11.5
징수관련	404	356	351	1	1	0	0.3
합 계	3,174	2,358	2,534	253	74	179	10.0

【심사청구 상황】

(2013연도)

구분	심사청구건수	신규청구건수 ①	처리필 건수 ②	청구용인건수 ③	전부	일부	비율③/②
	건	건	건		건		%
과세관련	5,388	2,700	2,907	226	68	158	7.8
징수관련	255	155	166	10	5	5	6.0
합 계	5,643	2,855	3,073	236	73	163	7.7

【소송사건 상황】

(2013연도)

구분	소송건수	제1심 제기건수 ①	종결건수 ②	패소건수 ③	전부	일부	패소비율③/②
	건	건	건		건		%
과세관련	524	99	267	22	14	8	8.2
징수관련	97	33	57	2	1	1	3.5
심판소관련	6	2	4	—	—	—	—
합 계	627	134	328	24	15	9	7.3

※소송사건 계수는 심급별로 합계한 계수입니다.

【출처】

국세청 리포트２０１５

조사사무처리규정

(제정 1989.01.25 국세청훈령 제1032호)

2015. 7

NTS 국 세 청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 161
제2조 기본이념 ····· 161
제3조 정의 ····· 161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 167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 조사사무의 관할 ····· 169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체제 ····· 169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171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 171
제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 171
제10조 신고성실도의 평가 ····· 171
제11조 선정절차 ····· 173
제12조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 173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 조사대상 과세기간 ····· 173
제14조 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 175
제15조 조사기간 ····· 175
제16조 조사기간의 계산 ····· 175
제17조 조사방법 ····· 175
제18조 통합조사의 실시 ····· 177
제19조 부분조사의 실시 ····· 177
제20조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 177

제5절 세무조사의 시작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179
제22조 세무조사의 연기 ····· 179
제23조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 181
제24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 181
제25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 183

제6절 세무조사의 진행

제26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 183
제27조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 183
제28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 183
제29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185
제3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 185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 187
제32조 부실과세의 방지 ····· 187
제33조 조사장소의 한정 ····· 189
제34조 조사시간의 제한 ····· 189
제35조 조사기간의 단축 ····· 189
제36조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191
제37조 세무조사의 중지 ····· 191
제38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 193
제39조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 193
제40조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 195
제41조 조사의 진행 ····· 197
제42조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 197
제43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 199
제44조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의 제한 ····· 199

제7절 세무조사의 종결

제45조 조사의 종결 ····· 201
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 ····· 201
제47조 결정.경정 ····· 201
제48조 결정.경정의 유보 ····· 201

제2장 일반세무조사

제1절 법인 조사관리

제49조 법인세 조사의 관할 ····· 203
제50조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 203
제51조 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 205
제52조 긴급조사의 결정.경정 방법 ····· 207
제53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 207

제2절 개인 조사관리

제54조 소득세 조사의 관할 ····· 207
제55조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 조사의뢰 ····· 209
제56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 209
제57조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 211
제58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 211
제59조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 213

제3절 거래질서 정상화 등 조사관리

제60조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 213
제61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 213
제62조 조사결과의 조치 ····· 215
제63조 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 215
제64조 개별소비세 등의 조사관리 ····· 215

제4절 국제거래 조사관리

제65조 이전가격심의위원회 ····· 215
제66조 자료제출의 요구 ····· 217
제67조 자료제출 요구방법 ····· 219
제68조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21
제69조 세무조사의 협력 ····· 221
제69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21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통칙

제70조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 223
제71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 223
제72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225
제7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 225
제74조 조세포탈 외의 조세범칙사건 등에 대한 심의 ····· 227
제75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227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7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 ····· 227
제7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 ····· 229
제78조 조세범칙조사의 제외 ····· 231
제79조 조세범칙조사의 방법 ····· 231
제80조 영장의 신청 ····· 231
제81조 조세범칙조사의 시작 ····· 233
제82조 압수·수색 등 ····· 233
제83조 압수조서의 작성 ····· 235
제84조 압수물건 등의 관리 ····· 235
제85조 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 235
제86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 235
제87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 237
제87조의2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39
제87조의3 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 ····· 239
제88조 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심의 ····· 239
제89조 조사결과의 보고 ····· 241
제9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 241

제3절 조세범칙 처분

제91조 조세범칙처분 ····· 241
제92조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 241
제93조 통고처분 ····· 243

제94조 고발 ····· 245
제95조 압수물건의 인계 ····· 245
제96조 무혐의 처리 ····· 245
제97조 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 245
제98조 조세범칙조사사무의 적용범위 ····· 247

제4장 보 칙

제99조 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 247
제100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기록관리 ····· 247
제101조 관련 서식 ····· 247
제102조 유효기간 ····· 24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정 1989. 1.25 국세청훈령 제1032호
일부개정 1989.12.15 국세청훈령 제1059호
일부개정 1994. 3.25 국세청훈령 제1169호
일부개정 1996.12.30 국세청훈령 제1259호
일부개정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83호
일부개정 2000.11.01 국세청훈령 제1437호
일부개정 2002. 1.31 국세청훈령 제1479호
일부개정 2003.12.20 국세청훈령 제1550호
전부개정 2006. 2.20 국세청훈령 제1606호
전부개정 2007. 7.27 국세청훈령 제1661호
일부개정 2009. 8.24 국세청훈령 제1765호
전부개정 2010. 3.30 국세청훈령 제1838호

(타)일부개정 2010. 7.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일부개정 2010.12.31 국세청훈령 제1877호
일부개정 2012. 6.29 국세청훈령 제1945호
일부개정 2015. 6.30 국세청훈령 제2105호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3. “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조사관리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사종결일”이란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행위를 끝마치는 날을 말한다.

9. “재산제세”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

10. “간접세”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말한다.

11.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12. “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

13. “심문조서”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

14. “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5. “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16. “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17.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19.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20. “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1.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3.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4.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5. “세목별조사”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6. “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7. “부분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8.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9. “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0. “사무실조사”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1. “간편조사”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2. “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3.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4.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5. “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장(일반세무조사) 및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1장(총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②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③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체제)

① 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시작 전 또는 조사진행 중에 협조 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사항을 의뢰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③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성실도의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①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과장・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조사대상 과세기간)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세탈루 수법.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규모 및 조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없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기간의 계산)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2.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제18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전가격조사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한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세무조사의 시작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서장은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⑤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3 조의 7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9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사의 시작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 등으로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식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로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제23조(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세무조사의 진행

제26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는 경우 조사관리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서"에서 명령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의 제공)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받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과태료의 부과,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

3.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4.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③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제3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부실과세의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지방청 감사관은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관서장은

그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장소의 한정)

①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에 의하여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세무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실조사, 간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조사시간의 제한)

①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업소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야간,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조사기간의 단축)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장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②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중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항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보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를 전부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통합조사는 이전가격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고, 이전가격조사, 주식변동조사 등은 그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종결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고, 자문 신청한 사항은 그 결과의 통지를 받는 때에 종결할 수 있다.

제36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국세기본법」제81조의8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3.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4.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조사기간)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 및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중지)

① 조사관서장은「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하에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서류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관서의 사무실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조사.간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원본을 조사관서에 임의제시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조사공무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의 진행)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규명 등에 필요한 서류.증빙.물건 등의 제출.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서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해 비치.기장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은 구두로 요구하되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매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짧거나 원거리 출장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서술형, 문답형)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①세무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1.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때

2.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항목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3.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①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변칙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등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작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의 제한)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표시하여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장확인출장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절 세무조사의 종결

제45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46조(조사결과의 통지)

①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규정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는 제2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세무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결정.경정)

①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세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끝 부분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다.

③ 조사관리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제48조(결정.경정의 유보)

①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결정.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세무조사

제1절 법인 조사관리

제49조(법인세 조사의 관할)

법인세 조사는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운영 또는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인세 납세지 이외의 주된 사업장(수입금액이 제일 큰 사업장. 다만, 제조 또는 판매활동 등 주된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관서장이 법인세 이외의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원천세 등. 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에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 범위 및 규모 등으로 보아 통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탈루 혐의를 법인세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조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인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법인세와 다른 경우 또는 과세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인납세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명단을 인계 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법인정기조사담당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정기조사담당국장)은 직접조사 또는 위임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할 관서장은 과장광고.허위사실유포.무분별한 텔레마케팅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조세채권확보가 어렵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범위는「법인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다.

제52조(긴급조사의 결정.경정 방법)

① 긴급조사(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일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 실지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규정하는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마지막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

제53조(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하여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 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갈음하여 처리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절 개인 조사관리

제54조(소득세 조사의 관할)

① 소득세 조사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지관할 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사업장현황조사는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하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소득세의 납세지가 사업장과 원거리인 사업자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간 조사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공동사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4.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사난이도 및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납세지관할 또는 사업장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 조사의뢰)

소득세조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납세자의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에 있어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6조(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비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 각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소득세외 세목(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원천징수 대상 세목 등. 이하 이 절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주소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통합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⑦ 개인사업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 다만, 과세 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통합조사의 조사관할)

①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는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의 소득세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탈루혐의를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세목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득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다.

제58조(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①소득세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할 경우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사업자의 조사관할이 다르면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소득세법」제82조(수시부과 결정) 및「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12조(수시부과 관할.절차)에 따라 세원관리부서에서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자명단을 보고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되,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제3절 거래질서 정상화 등 조사관리

제60조(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① 부가가치세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사업장까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① 부가가치세(추적조사대상자 포함)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조치)

① 조사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와 이 규정 제89조 및 제9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및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의 경우 실제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에 따라 양벌 규정 적용 대상자도 함께 통고처분 및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조사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제63조(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자료상의 세무대리인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간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알선.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4조(개별소비세 등의 조사관리)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관한 조사사무는 제1장(총칙)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국제거래 조사관리

제65조(이전가격심의위원회)

① 이전가격조사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조사1국,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 내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이하 이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사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소득조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2.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6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조사공무원은 이전가격조사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담표

7. 국제거래가격 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12.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다국적기업집단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용역계약서

나.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

다.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라.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

14.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한 원가분담약정서 등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1) 계약 참여자의 명단

(2)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3) 계약 참여자간의 권리관계

나. 원가분담수정약정서(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명세
라. 참여자 및 수혜자가 받을 기대편익의 평가명세
마. 실제로 실현된 실제편익의 측정명세
바.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명세

15. 그 밖에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국외 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조사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정도, 자료제출 준비기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67조(자료제출 요구방법)

①조사공무원이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요구는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에 의한다.

제68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사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9조(세무조사의 협력)

① 국세청장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세무조사협력)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방법 및 범위 등 국가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

제69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조사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통칙

제70조(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①조세범칙 조사관할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
3. 직접국세와 관련없는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인 경우에는 사업장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세목의 조세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로서 해당 세목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한 조사관서장의 조사관할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질문.검사, 일시보관,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행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현행 중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 또는 이미 시작한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관서의 관할구역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가 2 이상의 조사관할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나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의 관할을 직접 지정하거나, 각 세목별 납세지 관할 관서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이하 이 장에서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또는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제70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 업무 등에 활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처벌법」제3조 관련 :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2.「처벌법」제10조 관련 : 세금계산서수수위반조사 주관국장

제72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절차법」제5조 제1항 및「절차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7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절차법」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위촉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절차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내부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부서·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작성, 회의소집, 처분심의시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절차법 시행령」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절차법 시행령」제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촉위원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조(조세포탈 외의 조세범칙사건 등에 대한 심의)

위원장은「절차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라「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2조 및 제73조에 불구하고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처벌법」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제75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공무원은 「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7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

①조사관서장은「절차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5. 그 밖에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밖의 조세범칙사건(이하 "기타범칙사건"이라 한다)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사건 중 「절차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즉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전환)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제7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

① 조사관서장이 조세포탈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종료 직전에 조세범칙행위 등을 발견하는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심의한다.

④ 심의위원회 간사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서를 받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를 작성한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내부·위촉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절차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간사는 의결내용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의결서에 작성한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을 한다. 위의 승인에는 심의요청 사항 중 일부를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않는 의결을 한다.

⑦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에 대해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로 조사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의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를 수보한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즉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조세범칙조사의 제외)

조사공무원은 제7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9조(조세범칙조사의 방법)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절차법」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제80조(영장의 신청)

①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

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절차법」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장부.서류 또는 물건 등을 일시보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절차법」제3항에 따라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1조(조세범칙조사의 시작)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2조(압수.수색 등)

①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절차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참여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절차법」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절차법」제9조(압수.수색영장) 제4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일시보관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수색 조서 및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수색조서의 하단「 경위」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압수물건 등의 관리)

①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를 받고 반환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관리한다.

③ 압수.일시보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물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항에 따른 임시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를 받고 임시반환하여야 한다.

제85조(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은 「절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빙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외국인 출국의 정지)에 따라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출국금(정)지된 자의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라 한다)을 심문하는 때에는 「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심문조서에 기재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증거자료 및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를 순번을 붙여 본문에 인용하여 기재한 다음 이를 심문조서의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심문조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처벌법」 제3조와 관련하여 심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본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및 간인하도록 한다.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날인 및 간인은 반드시 직접 하도록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확보된 과세증거자료 및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를 순번을 붙여 본문에 인용한 다음 이를 후면에 덧붙여야 한다.
3. 과세증거자료,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사받은 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의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한다.

제87조2(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을 심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답변을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답변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3(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

① 제87조의 심문조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심문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심문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 제87조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심의)

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타 범칙사건에 대해 제76조 제3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심의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제73조, 제74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제89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절차법」 제12조(보고)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자, 범칙경위,「처벌법」제18조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처리의견 등 그 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조사관서장은 제89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를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범칙의 확증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공무원에게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 각 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보고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91조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세범칙처분

제91조(조세범칙처분)

① 제89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범칙의 확증을 얻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조세범칙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처분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92조(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① 제91조 제1항에 따른 범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77조 제1항과 「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와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76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7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절차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포탈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의견서를 조세범칙처분 심의회부서에 덧붙여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심의절차 등은 제77조를 준용한다.

제93조(통고처분)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과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통고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절차법」 제17조(고발)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 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금상당액 수납 관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고처분 관서장은 통고서 송달과 동시에 통고서 사본을 덧붙여 통고처분 내용을 벌금상당액 수납관서로 지정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고발)

① 조사관서장은「절차법」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93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이라도 고발할 수 있다.

④ 조사관서장은「절차법」제17조 제2항의 사유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서에 통고서 등 통고처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9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조사관서장은 제94조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경우로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절차법」제18조에 따라 압수목록과 함께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 압수물건 소지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무혐의 처리)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절차법」제19조에 따라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물건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7조(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①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물건이 일시보관 중인 장부 또는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사본을 보관한다.

1. 제93조에 따라 통고처분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2. 제94조에 따라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③「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제2항에 따라 몰취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공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하게 하고 이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98조(조세범칙조사사무의 적용범위)

① 모든 국세에 관한 조세범칙조사사무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장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장(총칙) 및 제2장(일반세무조사)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99조(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① 조사원증(별지 제21호 서식)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마다 조사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소지하고 조사결과의 보고를 할 때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제100조(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기록관리)

조사관리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1조(관련 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정과 관련 법령 및 훈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9. 1. 25. 국세청 훈령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관리대상 선정의 적용예)

이 준칙은 제2장(조사관리 대상 선정)의 긴급조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9. 12. 15. 국세청 훈령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5. 국세청 훈령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0. 국세청 훈령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는 199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20. 국세청 훈령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 국세청 훈령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20조 내지 제132조의4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31. 국세청훈령 제147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

제82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식변동조사 통합실시에 관한 적용예)

제57조 제1항의 주식변동조사의 통합실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20. 국세청훈령 제1550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0. 국세청훈령 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87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114조(고발)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동 법률의 시행일(2006. 3. 30) 이후 고발분부터 적용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의 신설규정은 동 법률의 시행일(2006. 3. 30) 이후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7. 27. 국세청훈령 제166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24. 국세청훈령 제176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0. 국세청훈령 제1838호)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국세청훈령 제1877호)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6. 30. 국세청훈령 제2105호)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